

인천지방법원 2022. 11. 30 선고 2022가단25565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1. 30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'부동산의 표시' 기재 각 부동산 중 2/17 지분에 관하여 2021. 4. 30.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'부동산의 표시' 기재 각 부동산 중 2/17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. 5. 20. 접수 제1454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 :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본문)

판사 고범진

